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요건 및 업종유지 요건 완화〉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1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요건 완화	2
2. 명문장수기업 업종유지 요건 완화	10
※ 참고자료	14
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개요	14
2. 명문장수기업 정책적 우대사항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01. 08.
3. 회부연월일 : 2025. 01. 0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까다로운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인하여 지정 현황이 저조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업종 간 매출액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Ⅲ. 검토의견

1.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요건 완화

개정안은 일반 유흥 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명문장수기업 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u>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 ----- <u>일반 유흥 주점업 등</u> ----- ----- ----- -----.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u>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 사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 ----- <u>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기업은 주된 업종의 변동 없는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사업</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등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 및 확인하는 제도임¹⁾²⁾.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확인기업 홍보 등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개발 및 정책자금,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른 기업들보다 우대³⁾하고 있음.

현행법상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⁴⁾,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업력 요건, 장기 고용·매출액·법인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도 요건, 법규준수 및 보건·안전 프로그램 시행 등 사회적 기여도 요건, 기업의 브랜드 가치·보유 특허의 수준·제품의 우수성 등 기업 역량 요건,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 등 기업혁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⁵⁾. 참고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3)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시 정책적 우대사항은 [참고자료 2] 참조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법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건설업
2. 부동산업
3. 금융업
4. 보험 및 연금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로, 2024년 12월말 기준 총 53개사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

[표 1] 명문장수기업 신청기업 및 확인(승인)기업수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청기업	50개사	68개사	87개사	71개사	100개사	90개사	49개사	82개사
확인기업 (누계)	6개사 (6개사)	4개사 (10개사)	4개사 (14개사)	5개사 (19개사)	11개사 (30개사)	7개사 (37개사)	6개사 (43개사)	10개사 (53개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015년 동 제도 도입 당시, 명문장수기업 요건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그리고 제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등이 중요하다는 국회 논의에 따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명문장수기업 확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전통적인 뿌리산업으로서 국민경제의 토대가 되어왔던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동 제도가 도입·시행되어 옴6).

그런데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으로 기존 업종간의 경계가 약해지고 신기술 관련 산업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업종 영위기업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비취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7).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6) 제332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5.4.20) 회의록 발췌

홍영표위원장: 우리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제조업 등 뿌리산업을 꾸준히 해 온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홍익표위원: 과거 전통적으로 생산과 관련되어 오랫동안 국민경제에 기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경제 상황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가능성은 남겨둘 필요가 있음.

벤처기업 인증의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 총 23개 업종을 인증 대상에서 제외(대통령령)하고 있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기술의 적용이 다양한 업종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가 변경(법률에 명시⁸⁾)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에 개정안은 일반 유흥 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업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이러한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규정은 명문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라는 점⁹⁾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7)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건의자료, 2022. 8, pp.13~15.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상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을 완화할지에 대하여는 동 제도 도입 당시의 입법 취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및 산업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법을 개정하는 때에도 그 문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단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¹⁰⁾¹¹⁾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즉, 개정안은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업

9) 제332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법률안 소위(2015.4.20) 회의록 발췌

백재현위원: 업력요건을 충족한 기업명단을 보면 건설회사가 있는데, 업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 특허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얻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함.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범위를 완성도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진복위원: 건설회사는 업력기준만 충족한 것일 뿐, 심사하면 다 탈락할 가능성이 있음.
장윤석위원: 우리가 명문장수기업 하면 연상되는 것은 건설업은 아닌 것 같음. 건설업, 부동산업은 근본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송대호 전문위원: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 관한 아래와 같은 수정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제62조의4,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0)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법 제12)13)14)를 참고한 것이나, “일반 유흥 주점업”의 경우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 유흥 주점업”15)16)을 뜻하는지, 혹은 또 다른 업종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개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17).

셋째, 사행성 업종도 명문장수기업 제한업종으로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감안한 자구 추가 여부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도 명문장수기업 제한업종으로 법률에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18).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I. 숙박 및 음식점업(대분류) - 56. 음식점 및 주점업(중분류) -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소분류) - 5621. 주점업(세분류) -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세세분류)

16)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일반 유흥 주점업에 대하여 “접객시설과 함께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각종 형태의 유흥주점을 말한다”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예시로 요정, 한국식 접객 주점, 룸살롱, 바(접객 서비스 딸린), 서양식 접객 주점, 비어홀(접객 서비스 딸린) 등을 제시하고 있음.

17) 또한, 통계청 고시 개정에 따라 개정법률의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어 가급적 법률이나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종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신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하게 창출되고 있다는 점,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반 유흥 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제한 완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질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명문장수기업 업종유지 요건 완화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유지 요건(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과 관련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도 주된 업종의 변동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제1호 후단).

현행	개정안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u>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 ----- <u>일반 유흥 주점업 등</u> ----- ----- ----- -----.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u>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 사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 ----- <u>기</u> ----- <u>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기업은 주된 업종의 변동 없는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사업</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중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는 요건으로, 현행법에서는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주된 업종의 변동을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별하도록 하되,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¹⁹⁾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제품·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 국내 100년 기업 중에는 업종·사업 등의 변경을 통해 성장한 사례가 있으며 반대로 한 업종을 고수하다가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도 있다는 점, 실제 다수의 기업들이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각 사업의 매출에 변동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업종유지 요건을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대통령령의 규정도 기업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준이라는 의견이 있음²⁰⁾.

이에 개정안은 현행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고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도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업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주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이기만 하면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주된 업종보다 총 매출액 대비 매출액의 비중이 더 큰 특정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것임.

“주된 업종”은 통상 총 매출액 대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뜻한다는 점에서 해석상 오해를 유발할 우려²¹⁾가 있으므로, “주된 업종”이라는 용어 대신 “기존 업종”과 같은 다른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0)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건의자료, 2022. 8, pp.13~15.

21) 일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 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참고로,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²²⁾, 백년소상공인의 요건²³⁾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서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유지 요건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 업종유지 요건을 현행법이나 개정안과 같이 기존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영위하는 업종간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463

2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④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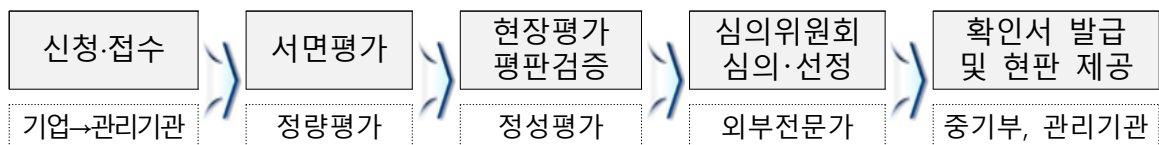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도입배경)**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 **(개념)**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
- **(기본요건)**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
 - *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봄
- **(확인요건)** 필수지표*를 만족하고,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기업 중 선정
 - * ① 최근 5년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업종 평균 이상일 것 ② 법인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③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원 유죄 판결 이력이 없을 것
- **(선정현황)** '17년부터 '24년까지 총 53개사 선정(중소38, 중견15)
 - * 총 53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 ('23) 6 → ('24) 10

□ 확인절차



*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 우대내용

- **(자긍심 고취 등)**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현판 제공, 언론·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등
- **(지원사업 참여우대)** 정책자금, 지역특화사업,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2】 명문장수기업 정책적 우대사항

분야	사업명	우대사항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1점
기술보 호	중소기업기술거래활성화지원사업	가점 1점
지역 특화 산업	지역주력산업 비R&D	가점 2점
	시군구연고산업	가점 2점
인력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 선발)	가점 1점
수출	온라인수출플랫폼	가점 2점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가점 2점
	수출 바우처	가점 1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가점 1점
	수출 컨소시엄 사업	가점 1점
판로	중기간경쟁입찰참여시, 신인도	가점 2점
자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p 감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2025. 4, p. 8.